

「2023 제주웹툰캠퍼스 지역 만화·웹툰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공고(안)

1. 사업목적

- 제주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기성 작가 및 기업의 지원을 통해 도 내 웹툰제작 환경 구축 및 육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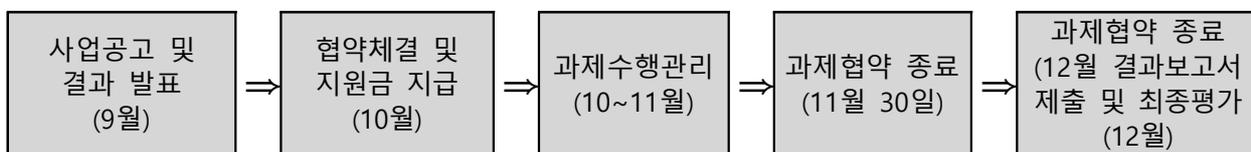
2. 사업개요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1. 30.
- 사업내용 : 어시스턴트 지원/ 문화(웹툰)용 제주 3D배경제작지원/만화(웹툰) 출판지원
- 지원규모 : 금25,000천원(이천오백만원)

지원구분	어시스턴트(보조작가) 지원	만화(웹툰) 제주 3D 배경 제작 지원	만화(웹툰) 출판 지원
지원내용	작품의 어시스턴트 인건비 지원(최대2인)	만화(웹툰)용 제주 3D 배경 제작 지원	우수 만화(또는 그래픽노블)의 출판 지원
지원규모	8,000,000원 내외 (4,000,000원×2과제 내외)	8,000,000원 내외 (4,000,000원×2과제 내외)	9,000,000원 내외 (9,000,000원×1과제 내외)
지원대상	연재를 목적으로 웹툰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와 계약(계약예정)했거나 연재를 위해 현재 작품을 제작(준비) 중인 작가 및 사업자	제주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웹툰작가	국내 미 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만화·웹툰 창작자 또는 사업자

※ 각 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 편수는 평가과정에서 총 지원규모(25백만원)에서 변동가능

- 중복지원 불가, 1인(기업)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 추진일정(안)



※ 위 일정은 신청서 접수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모집분야

○ 어시스턴트(보조작가) 지원

항목	내용
지원분야	웹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어시스턴트 인건비 지원(최대 2인까지 가능)
지원금액	금 4,000,000원 내외(과제당/기타소득 원천징수 금액 포함)/ 총2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연재를 목적으로 웹툰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와 계약(계약예정)했거나 연재를 위해 현재 작품을 제작 중인 작가 및 사업자 ※ 작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사업자: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자(사업자등록증에 해당관련 업종 명기)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작품은 외부에 정식연재가 안된 작품이어야 하며, 현재 연재 중인 작품인 경우, 아직 플랫폼에 공개가 되지 않은 회차여야 함 •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어시스턴트 고용관계 유지 및 과제제출 •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되며, 진흥원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지원금은 100% 어시스턴트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
제출서류	1. 신청서(별첨1) 2. 수행계획서(별첨2) 3. (공통)개인정보 동의서(신청자/어시스턴트 서명 필수) 각 1부(별첨3) 4. (공통) 신청자격 자가 진단서(별첨4) 5. (공통) 심사위원 추천표(별첨5) 6. 연재 예정 또는 추진 중인 작품 완성원고(1화) ※ 50컷내외, jpg-png, 해상도 300dip이상, 가로700~800px내외(세로무관) 7.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발급 8. 플랫폼 및 에이전시 계약서(해당자만/민감 정보 삭제 후 제출) 9. 어시스턴트 포트폴리오 자료(자유양식) ※ 어시스턴트 가산점(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월(9월) 기준으로 발급(계약서 제외)
최종제출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1부 2) 최종 웹툰 원고: 4화분 이상 원고 제출(1회당 50컷내외) 3) 어시스턴트 인건비 집행 증빙(계약서, 입금확인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 4) 어시스턴트 수행보고서 1부.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시스턴트는 지역무관(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소지인 경우 가점 부여) • 접수시 연재관련 계약된 작품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지원사업(일자리 지원사업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 저작권 침해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본인) 인건비 편성 불가 -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

○ 만화(웹툰)용 3D 제주 배경 제작지원

항목	내용
지원분야	만화(웹툰) 제주도 3D배경(장소) 제작지원
지원금액	금 4,000,000원 내외 (과제당/기타소득 원천징수 금액 포함) / 총 2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웹툰작가(2인이상 팀으로 지원가능) ※팀으로 지원 시 팀원 모두 제주도 거주자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3D 제주도 배경 및 제주관련 소품 제작이 가능한 작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은 스케치업/블렌더 등 제작툴을 사용하여 3D 디지털파일로 제작 - 배경은 제주도 배경이어야 하며, 실존배경(랜드마크: 이중섭거리, 민속촌 등)을 70%이상 3D로 제작. 배경은 제주도임이 잘드러나는 장소로 선택 • 최소 제작분량: 배경 2곳(배경을 구성하는 Prop은 최소 10개 이상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자연풍경 배경은 지양 • 제작이 완료된 배경 및 소품은 사업기간 내 플랫폼(배경,소품거래)에 등록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등록예정인 플랫폼에 등록조건, 업로드 형식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작계획 수립 •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되며, 진흥원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 공고일 이전에 완성된 작품은 지원 불가(이미 제작된 작품 구매 및 재활용 불가) • 지원금은 100% 인건비(후지급)이며, 결과 평가를 통과한 작가에게 원천징수 후 입금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별첨1) 2. 수행계획서(별첨2) 3. (공통)개인정보동의서(별첨3) 4. (공통)신청자격자가진단서(별첨4) 5. (공통)심사위원추첨표(별첨5) 6. 포트폴리오 제출(자유양식, JPG로 변환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및 소품 관련 포트폴리오 위주로 제출 7. 주민등록등본(팀원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발급 <p>※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9월) 기준으로 발급</p>
최종제출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1부 2) 제출된 수행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배경 및 소품 제작 파일(원본, JPG로 변환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소품 거래 플랫폼 등록 증빙(등록된 화면 캡처 등) 포함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미비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전 완성이 되었거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작품 - 무료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제작배경 → 결과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 만화출판 지원

항목	내용
지원분야	만화(그래픽노블 포함) 및 웹툰 출판지원
지원금액	금 9,000,000원(부가세 제외) 내외 / 총 1개 과제(100% 출판비용 편성)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웹툰작가 또는 사업자 *단, 사업자의 경우 사업등록증상 출판업 명기 필수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미 출판 창작원고 보유 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종료일(23.11.30)까지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원고를 보유한 작가(저작권 보유 필수) - 사업자의 경우 작가와 출판관련 계약이 완료 된 자 •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되며, 진흥원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중도 작품 변경 불가, 공동제작인 경우 세부사항은 저작권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지원금은 100% 출판비용 편성(업무추진비, 회의비, 식비, 여비 편성 불가) • 사업종료 후 출판물 10권 이상 진흥원 제출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신청서(별첨1) 2. 수행계획서(별첨2) 3. (공통)개인정보 동의서(별첨3) 4. (공통)신청자격 자가진단서(별첨4) 5. (공통)심사위원추첨표(별첨5) 6. 출간용 원고 1부(PDF로 제출) 7.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발급 8. 출판계약서/출판저작권등 원작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p>※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9월) 기준으로 발급(계약서 제외)</p>
최종제출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1부 2) 유통이 가능한 단행본으로 편집이 완성된 샘플도서 1종 이상(표지포함)/500권 이상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의 최소 분량은 만화원고 120쪽 이상(도서크기 128mmX188mm 이상) - ISBN 발급 필수 및 유통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단, 최종출판물(500권 이상)은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는 제작이 완료되어야 함 3) 저작권 등록증빙 서류 4) 사업비 지출 증빙 서류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내부) 편성 불가 • 출판사와 출판(유통) 계약이 된 경우 가산점 부여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미비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전 도서로 발간되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종이책ISBN을 발급받은 경우 - 비매품이거나 해외에서만 발간/판매 되는 경우 - 단행본 도서로 기 발행되었거나, 도서의 수정, 수정증보, 개정인 경우 -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

○ 공통사항

- 본 지원사업에 1인, 1개 과제(작품) 지원가능(중복불가)
- 모든 사업의 지원자 및 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제주도 거주자(소재)여야 함
- 협약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제출(보험기간, 협약기간+60일)
- 지원 대상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대본(구성안) 저작권 등을 침해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팀.사업자)에게 있음
- 중도 작품 변경 불가(최소 사업계획서 내용기준), 공동제작인 경우 세부사항은 저작권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미비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4. 신청서제출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9. 13.(수) ~ 2023. 9. 25.(월)
- 접수기간 : 2023. 9. 13.(수) ~ 2023. 9. 2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culture@ofjeju.kr 로 이메일 발송
-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	전화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팀	김영현 책임연구원	culture@ofjeju.kr	064)766-0704

- 신청서 서류 : 각 지원분야별 제출 서류 참조
- 제출방법: 파일명은 ‘지원분야_000(예, 만화출판지원_홍길동(기업명)’ 으로 제출서류 순으로 압축(.zip)하여 제출
- ※ 서명/직인이 포함된 서류(스캔필수) 및 기타서류는 모두 PDF 파일로 제출

5. 심의(평가)

- 서류평가
 - 사업추진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심의(평가)위원회(5인)’ 를 구성하여 제출한 과제계획서 기준 서류 평가
 - 심의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우선지원과제 선정
 - 최종결과 발표일 : 신청서 접수 완료 후 개별 고지 예정
 - ※ 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평가 방식 변동 가능(예, 서류평가→ 발표평가)
- 선정기준
 - 심의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심의위원별 평가결과를 취합,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여 총점 및 평점 산출하며, 심의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최고·최저점을 포함한 평균점수 산출

- 분야별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규모 및 지원 편수는 평가과정에서 총 지원규모(25백만원)에서 변동가능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 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

○ 평가표

- 어시스턴트(보조작가)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내용	배점
계		100
사업계획 완성도	연재 작품(예정) 완성도(기획, 차별성 등), 사업목적 적정성	50
어시스턴트 활용계획	추진과정에 따른 어시스턴트 필요성 및 활용계획(경력 등)	50

- 제주 3D 배경·소품 제작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내용	배점
계		100
기획성	사업내용의 적설성, 사업 수행자의 역량(포트폴리오), 배경 소품 활용 방안	50
상품성	배경/소품 제작 내용 및 수량, 상품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50

- 만화출판 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내용	배점
계		100
기획성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및 기획력 사업수행자의 경험 및 역량(준비성)	40
작품성	제작원고의 우수성 작품의 차별성(소재, 줄거리 등)	40
기대효과	유통 가능성, 홍보·마케팅 계획 등	20

○ 우대가점

-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우대가점 중복 가능)

어시스턴트(보조작가) 지원	제주 3D 배경·소품 제작 지원	만화 출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시스턴트(보조작가) -주민등록상 제주도 거주자(2점) • 연재계약이 된 작품(3점) • 제주웹툰캠퍼스 입주작가(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웹툰캠퍼스 입주작가(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및 유통계약이 완료된 작품(5점) • 제주웹툰캠퍼스 입주작가(1점)

※ 입주작가(기업)은 신청자 기준으로 최대 1점 적용/ 우대가점은 합산 5점까지 적용

○ 결과발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6. 결과물 귀속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작가(사업자)가 귀속함. 다만, 아래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시설 운영에 활용(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

7.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과도한 폭력묘사·언어, 선정성 등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진흥원에서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지원자
- 우리원의 채무가 있거나 민·형사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작가(기업)
 -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신청 접수시작일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

8. 과제신청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작품은 제외
- 과제 신청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되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함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필요시 과제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협약서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 및 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의 추적을 위해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응해야함
-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음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협약이전 제작이 완료된 완성물을 과제 완성 결과물로 제출 후 적발되거나 판명 될 경우, 향후 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재)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관리 요령」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

2023년 9월 13일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